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정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34

발의연월일 : 2016. 11. 7.

발의자 : 정진석 · 김성태 · 박준영  
            소병훈 · 손혜원 · 원혜영  
            이용호 · 이종명 · 이철우  
            장석춘 · 정갑윤 · 최명길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백제역사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등 한국의 세계유산 등재 확대와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시행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음.

따라서,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한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세계유산보존협의회 설치를 통해 보존관리 관련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가능케 하는 등의 관리를 통해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346호)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들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세계유산 보존을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세

계유산지구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정지구와 중복될 경우에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제5조(주요시책 등의 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세계유산의 등재·보존·관리·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종류, 협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국제협력의 증진 및 지원) ① 국가는 세계유산 관련 국제기구, 국제 전문가단체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개발도상국가가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등 세계유산 보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7조(남북한 간 교류협력 증진)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으로의 등재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남북한 간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북한 소재 세계유산으로의 등재와 세계유산의 보

존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호 등)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내의 우수한 문화재를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잠정목록 유산(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잠정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의 보존·관리 및 학술연구의 지원 등을 통하여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에 대하여 등재된 날부터 국가 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 및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재 신청 대상의 선정절차와 제3항에 따른 유지·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19조를 준용한다.

제9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12조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 관련 국제협력 및 남북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사

항

4.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세계유산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의 세계유산에 대하여 종합계획을 반영한 세계유산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5년마다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재검토한 때에는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세계유산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협의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자를 정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문화재청장이 기본

계획을 수립할 자를 지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자를 지정한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지정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해당 세계유산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한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세계유산지구에서의 토지보상·이주 등 주민 지원 및 보상 방안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세계유산지구 내 관광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세계유산지구 내 생활편의시설 확충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6. 해당 세계유산 관련 교육 및 홍보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해당 세계유산 관련 기관·단체 간의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8. 해당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 및 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세계유산의 보존·정비를 위한 사업(이하 “보존·정

비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2조(세계유산지구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에 따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 세계유산 등재지구: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구역
2. 세계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세계유산 등재지구의 주변지역 중 세계유산의 공간적 보호와 조망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3. 세계유산 역사문화환경 조성지구: 세계유산의 가치를 제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생활환경의 개선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세계유산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서 삭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세계유산지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세계유산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계유산지구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세계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의 보호) 문화재청장이 제12조 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세계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한 지역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정해진 것으로 본다.

제14조(세계유산의 관리를 위한 조사) ①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세계유산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세계유산별로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재검토에 관한 사항
2. 보존·정비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전문가
3. 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세계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사업시행자) ①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는 보존·정비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되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경우 자격요건 및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등) ① 사업시행자는 보존·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그 소유자 및 관계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보존·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에 의한 취득·사용,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9조(이주대책) ① 사업시행자는 보존·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터전을 상실하게 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

제20조(정기점검) ① 관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정기점검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세계유산의 국가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세계유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직접관리를 요청해 올 경우
2. 세계유산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로서 국가의 일관성 있는 관리가 필요할 경우
3.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세계유산적 가치가 현저히 훼손되는 등 세계유산의 지위 유지가 위태롭다고 판단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직접 관리에 관한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관계기관의 협조) 문화재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재정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보존·정비사업
2. 세계유산 관련 기록의 작성·유지 및 정기점검
3. 협의회의 운영
4. 세계유산의 등재·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술조사·연구·기술개발 및 국내외 교류 활동

## 5. 그 밖에 국내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5부터 25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5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제1호	세계유산 등재지구
256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제2호	세계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257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제3호	세계유산 역사문화환경 조성지구
-----	---------------------------------------	------------------------